「하나-ONE 해외송금서비스」 개정대비표

1. 개정시행일 : 2020년 5월 21일

2. 개정내용 : 면책조항 문구 수정, 당행 명칭 명확화, 문구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 9 조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래 외국환 은행을 <u>하나은행</u> 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래 외국환은행 을 <u>㈜하나은행으로</u> 지정하여야 합니다.	당행명칭 명확화
제 14 조(서비스의 이용, 등록내용 변경 및 해지 신청)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서면으로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비스의 해지 및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제 14 조(서비스의 이용, 등록내용 변경 및 해지 신청)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은행에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문구 수정
제 15 조 (면책) 이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아래 각호의 경우 은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1. 등록한 송금정보 오류, 수취은행(중계은행 포함)의 귀책사유 등으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송금한 대금이 대외은행으로부터 반환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 2. 천재지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학재, 통신장애, 환거래은행의 지급지연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사유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제 15 조 (책임) 1. 은행은 이용자가 은행에 등록한 송금정보 오류, 수취은행(중계은행 포함)의 귀책사유 등으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송금한 대금이 대외은행으로부터 반환되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을수 있습니다. 2. 은행은 정전, 화재, 통신장애, 환거래은행의 지급지연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서비스가 지연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중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면책조항 문구 수정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 적용